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강화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96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강화(안 제6조, 제8조의2 등)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8.

다. 회 부 일 : 2025.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이 없이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대형 이스포츠시설에 화재·붕괴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운영 기준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 계획 수립 시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 나.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안전,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무대 및 장비의 안전 등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라.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강화(안 제6조, 제8조의2 등)

개정안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u>8의2.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u>제8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①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안전,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이하 “안전·관리 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안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u>

현행	개정안
<신설>	의 지정을 포함한 안전관리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무대 및 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화재·붕괴 등 재해나 그 밖의 위 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안전 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안내 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필 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구성 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이스포츠시설의 안전· 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 임·위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현행	개정안
	<u>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¹⁾와 시설 구축·개선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이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 이스포츠 대회 개최 증가와 이에 따른 화재·붕괴·군중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 이용 국민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한편, 개정안은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대책 마련, 안전점검 수검, 보수·보강 이행 및 시정명령 준수, 과태료 부과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스포츠 시설과 관련하여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포괄적 정의만을 두고 있을 뿐, 이스포츠시설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범대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이스포츠 대회는 컴퓨터·모니터·네트워크 등 최소한의 장비만으로도 개최가 가능하며, 별도의 전용시설이 아닌 기존 PC방, 공연장, 체육관, 전시장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참고로, 현행 법령에 따라 지역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³⁾의 영업소를 이스포츠시설로 지

2)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이스포츠대회 개최 현황(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연도	대회명	개최장소	시설 유형	안전관리 적용 법령
2023	LCK 스프링 결승	서울잠실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LCK 서머 결승	대전 컨벤션센터	전시장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LoL 월드 챔피언십	서울 고척스카이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24	LCK 스프링 결승	서울 KSPO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LCK 서머 결승	경주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발로란트 챔피언스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	공연법 등
2025	LCK 서머 결승	경주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LCK 결승전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	공연법 등

※ (참고) 대형 무대 및 조명 설치 시 공연장 외의 공연으로 분류, 무대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재해대책 계획 수립 필요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

정·운영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⁴⁾ 이러한 시설들은 조성 주체, 운영 목적, 규모 및 시설 성격이 서로 상이하어, 일부 특정된 시설 유형을 기준으로 이스포츠시설 전반에 동일한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 및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아울러, 이스포츠 대회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공연장, 실내체육관, 전시장, PC방 등 다양한 시설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들은 이미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⁵⁾에 따라 안전관리 및 점검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이스포츠 대회는 체육관이나 공연장 등 기존 다중이용시설에서 개최되어, 무대 안전, 소방 안전, 인파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규율

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역 상설 이스포츠경기장 현황 및 지정 이스포츠시설 현황은 첨부한 [참고2], [참고3] 참조

5) 시설유형·분야별 안전 관련 주요 법령 현황은 첨부한 [참고1] 참조

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 ‘이스포츠시설’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경우, 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 규제 및 운영자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시설 유형별 안전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중복 규제 및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간 정합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체계상 이스포츠시설의 범위와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관리대책 마련, 안전 점검 수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 중복 규제 및 현장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시설유형 · 분야별 안전 관련 주요 법령 현황

시설유형 및 분야		적용 법령	법령 주요 내용
시설유형	공연장 (아레나 등)	「공연법」	■ 제11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운영자 화재나 그 밖의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자체장에게 신고 ■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안전관리 필요 비용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 계상 ■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포함하여 안전관리조직 두어야 함 ■ 제11조의4(안전교육)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실시 의무 ■ 제11조의5(피난안내),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공연장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 및 검사받아야 함 / 정기안전검사(등록한 날부터 3년 초과 등) / 정밀안전진단 / 매년 자체 안전검사 실시 / 지자체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 요구 및 이행 의무 ■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문체부 장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2개 이상 지정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체부 장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 업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가능 ■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에의 이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체육시설 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의 시설물 보수·보강 필요 조치 이행 및 시정명령 ■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문체부 장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관람장 등)	「건축물관리법」	■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다중이용업소 (pc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등
분야	소방안전 (시설공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시행,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조치, 소방안전관리 등 ■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자체점검 등
	인파관리 (대규모행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2

지역 상설 이스포츠경기장 현황

- (근거법령) 이스포츠법 제8조제3항
- (운영현황) 전국 4개소 조성·운영 중, 1개소 구축 중
- (예산)
 - (조성비) 리모델링 30억, 신축 40억(지방비 50%이상 매칭)
 - (운영비) 연 5억('25년, 4개소 기준)

구분 (단위: 억원)	부산 ('20.11.18. 개관)	광주 ('20.12.20. 개관)	대전 ('21.9.15. 개관)	경남(진주) ('24.5.17. 개관)	충남(아산) (건립 중)
주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72 삼정타워 15~16층	광주 남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첨단과학관 북관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 교 100주년 기념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5-1
규모 (총면적 기준)	2,739㎡ (주경기장 330석, 보조경기장 144석)	4,391㎡ (주경기장 1,005석, 보조경기장 160석)	4,595.7㎡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50석)	약 4,933㎡ (주경기장 700석, 보조경기장 76석)	전용 5,675㎡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100석)
조성비용 (국비 : 지방비)	30 : 30	30 : 30	30 : 40	30 : 50	40 : 2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3

지정 이스포츠시설 현황

- (근거법령) 이스포츠법 제8조제4항
- (예산) 별도 예산지원 없음(지정시설 현판제공, 동호인대회 통한 시설 홍보)
- (사업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업소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 동호인대회 개최 등 활용
- (지정기간/지정현황) 2년 / '25년 전국 40개소*

* 지정 이스포츠시설 현황('25년)

연번	지역	지정번호	상호	주소
1	경기	2024-1호	하이넷 피씨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9번길 41 7층
2	대전	2024-2호	인싸피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57 401-1호
3	충북	2024-3호	샵PC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0 상가동 501호
4	전남	2024-4호	위너피시방 남악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2번길 14 3층
5	대전	2024-5호	PERFECT PC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121번길 45-8 3층
6	경기	2024-6호	M-ZONE PC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2 701호
7	부산	2024-7호	윽티멤존 피시카페서면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92번길 16 2층
8	경기	2024-8호	모던PC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8 403호
9	경북	2024-9호	중앙컴퓨터(애플PC방)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89 3층
10	경기	2024-10호	스타덤PC 반월점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59 3층 301-2 302호
11	전북	2024-11호	스테이 PC방(나운점)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66 2층
12	충북	2024-12호	샵PC클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62-2 2층
13	서울	2024-13호	타워PC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1층
14	서울	2024-14호	윽티멤존PC카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3길 19 지하1층
15	서울	2024-15호	오즈 쓰리팝 피시카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8 지하1층
16	서울	2024-16호	오즈 쓰리팝 PC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3 지하1층
17	서울	2024-17호	오즈피씨카페리저브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10 지하2층
18	서울	2024-18호	윽티멤존PC카페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8길 29 지하1층
19	서울	2024-19호	오즈PC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341 2층
20	서울	2024-20호	1프로 아레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86 나호 2층
21 ~40	: (생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